교무위원회규정

제정 : 1995.04.01 개정 : 1998.03.01 개정 : 1999.03.01 개정 : 2001.03.01 개정 : 2014.11.01 개정 : 2018.03.01 개정 : 2020.03.01 개정 : 2021.03.01 개정 : 2021.12.01 개정 : 2022.10.01 개정 : 2023.10.16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의 구성, 임무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03. 01., 2021. 12. 01>

제2조(명칭) 본 위원회는 교무위원회라 칭한다(이하 "위원회" 라고 한다)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
- 1. 위원장: 총장 , 부위원장: 교무처장, 위원: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 10인 이내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- 2. 간 사 : 교무팀장
- ② 위원장은 업무를 통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 대행한다.
- ③ 총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3.01.>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· 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03.01.>

- 1. <삭제 2018.03.01.>
- 2. 학사 일정에 관한 사항
- 3. 학과 및 부설기관의 신설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
- 4.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제정, 개정에 관한 사항 <개정 2021.03.01.>

- 5. 입학, 수료, 진급 및 졸업에 관한 방침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
- 6. 교수 회의의 위탁 사항
- 7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6조(전문위원 위촉)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약 간명을 위원 중에 위촉할 수 있다.

제7조(업무관리) ① 위원회에 관한 사무는 교무처 교무팀에서 관장한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3.10.16.>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

부 칙

위원회의 규정은 1995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위원회의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위원회의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위원회의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위원회의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위원회의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츠

위원회의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위원회의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위원회의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위원회의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부 칙

위원회의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